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 상임위에 모태펀드 회수재원 현황 등 제출〉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70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 개요	2
2. 국회 상임위에 모태펀드 회수재원 현황 등 제출	8
 [참고자료]	 1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왕진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5. 4. 23.
3. 회 부 일 : 2025. 4.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수산물투자모태펀드는 농식품 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해당 산업 전반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0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운용을 맡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물투자모태펀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은 2010년 출범 이후 보조·용자를 보완·대체하는 제3섹터형 농식품 정책금융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2024년까지 총 7,047억원을 조성하였음.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연도별 재원 조성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농특회계	507	-	-	-	-	-	-	-	-	-	-	-	-	-	-	507
농안기금	-	500	500	500	600	-	-	-	-	-	-	-	-	-	-	2,100
FTA기금	-	-	-	-	-	500	300	200	100	200	350	400	400	400	550	3,400
수산물발전기금	-	-	-	-	100	100	100	100	100	70	70	70	70	70	190	1,040
농금원	0.3	-	-	-	-	-	-	-	-	-	-	-	-	-	-	0.3
계	507.3	500	500	500	700	600	400	300	200	270	420	470	470	470	740	7,047.3

자료 : 2025년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24.12.)

이와 같이 조성된 모태조합의 자금은 현행법 제11조⁵⁾에 따라 ① 벤처투자회사,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③ 투자관리전문기관, ④ 농·수협조합 및 중앙회 등이 민간의 출자금과 매칭하여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투자를 실시하는 데 사용됨.

4) 3섹터형 농식품 정책금융 : 공공부문(1섹터)과 민간부문(2섹터)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경영체에 투자하는 형태의 농식품 정책금융

5)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3. 투자관리전문기관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개요]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농수산물투자조합법 제11조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주요내용	운용사 등이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 결성
결성주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투자관리전문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 등
주요 투자대상	농식품경영체
투자의무 비율	출자금액 60% 이상 투자
존속기간	3년 이상
출자금 총액	10억원 이상
주목적 투자(출자)	농식품경영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27.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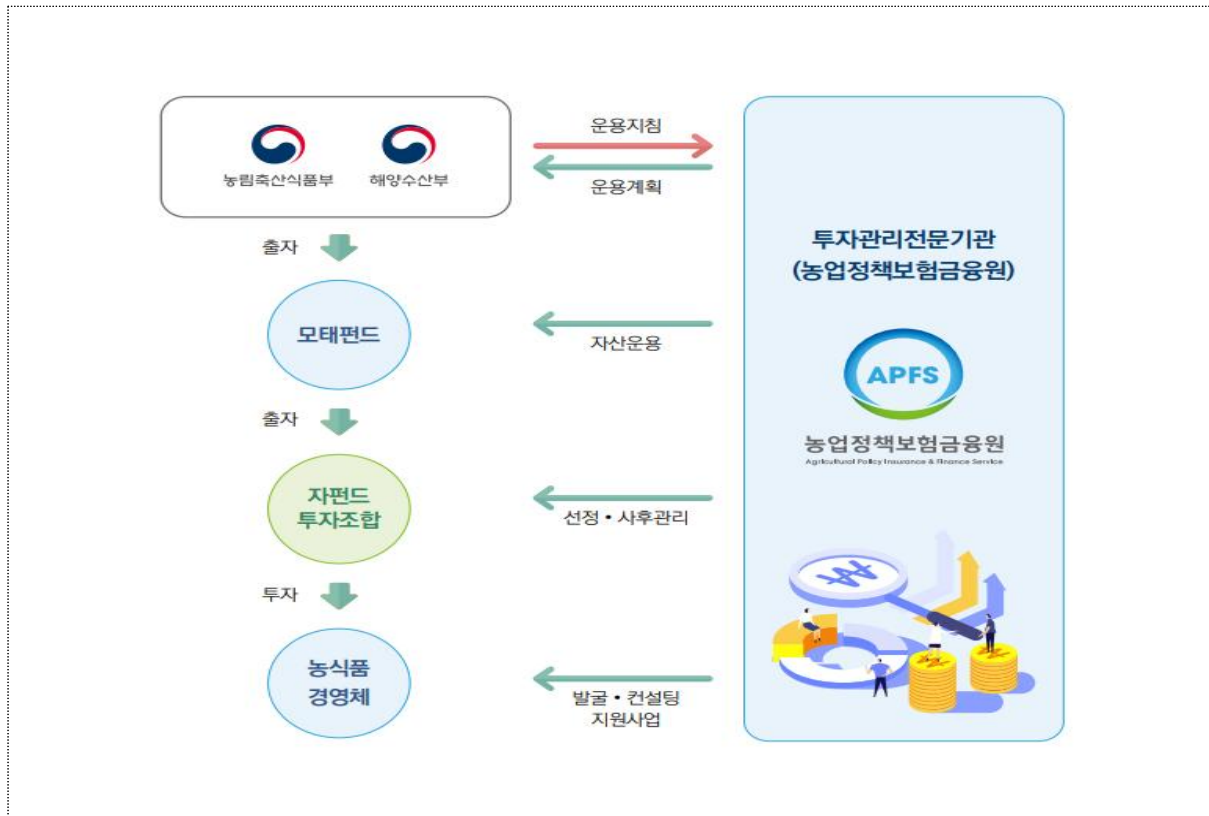
한편, 농어업분야는 기후, 토양, 계절 변화 등 다양한 자연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고, 기상 조건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변동될 수 있으며, 다른 산업에 비해 체계적인 데이터나 통계 자료가 부족한 특성이 있어 투자자와 농식품경영체 간 정보비대칭이 존재함.

따라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의 자금과 투자대상인 농식품경영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제5조⁶⁾는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운용하고, 농식품경영체에 대해 직·간접 투자를 행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6)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농식품경영체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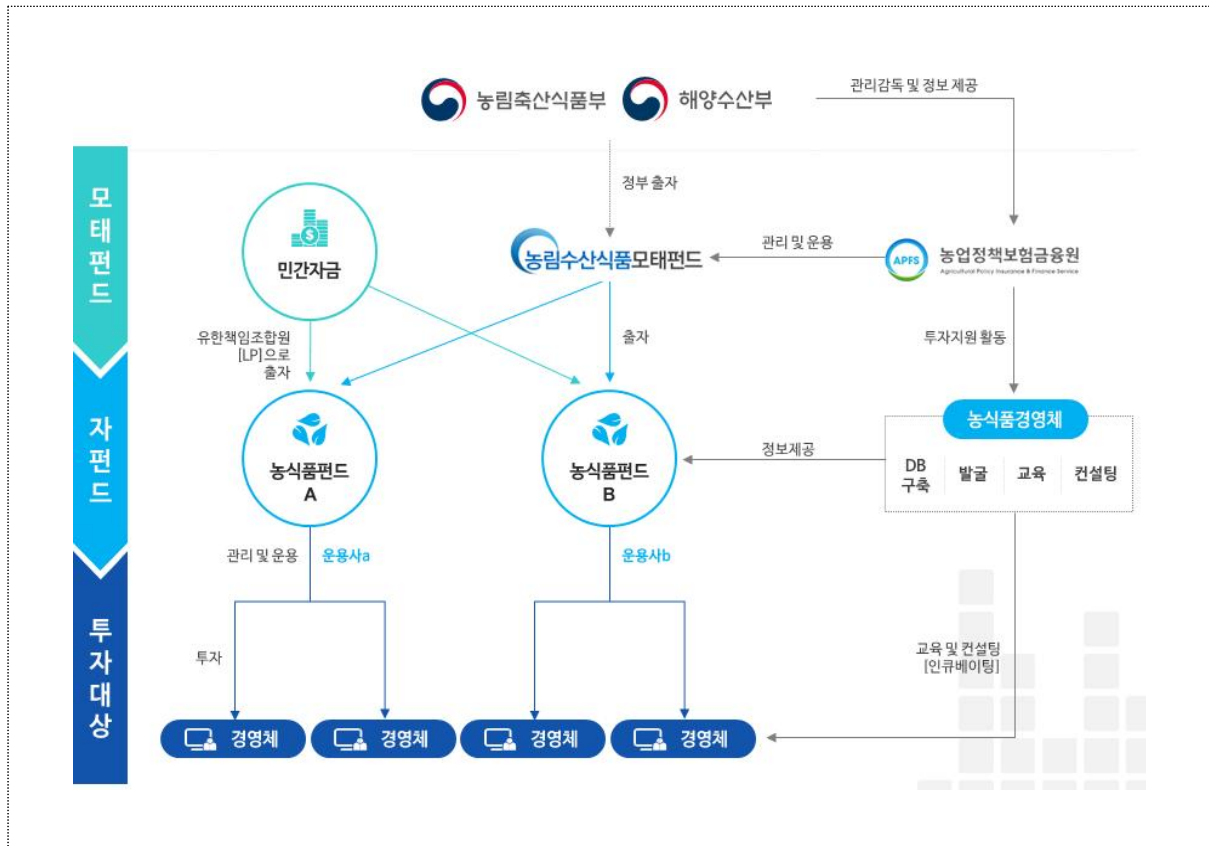


자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물투자모태펀드 홍보 브로슈어(2024)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모태펀드의 출자·투자 구조를 살펴보면,

“① 정부(농림부, 해수부) 재정으로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 결성(정부 출자) ⇒ ②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농림수산물투자모태펀드)을 관리·운영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민간(자산운용사)과 매칭하여 벤처투자회사 등이 결성한 농림수산물투자조합(농식품펀드, 자펀드)에 출자 ⇒ ③ 농림수산물투자조합이 성장 가능성 있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 ⇒ ④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농식품경영체 경영컨설팅 등 사후관리 ⇒ ⑤ 농림수산물투자조합이 농식품경영체로부터 투자금 회수 ⇒ ⑥ 농림수산물투자조합의 재투자”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 출자 및 투자 구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3. 제출)

2024년 말 기준으로 농림수산물식품투자모태조합은 140개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에 1조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이 중 농식품펀드는 120개(1.3조원), 수산 펀드는 20개(2,085억원)임.

민간 출자액 약 9,776억원을 포함하면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의 누적 운용자산은 총 2조 2,776억원인데, 실제 투자는 1,289건으로 약 1조 5,568억원이 이루어져 투자 소진율은 68.4%로 나타나고 있음.

[농림수산물투자조합 투자 현황]

(기준 : '24.12월)

계정 구분	농식품투자계정	수산물투자계정	합 계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개수	120개	20개	140개
자펀드 결성 총액(A)	19,808억원	2,968억원	22,776억원
투자 건수	1,119건	170건	1,289건
투자 금액(B)	13,380억원	2,188억원	15,568억원
투자 소진율(B/A)	67.5%	73.7%	68.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5. 6. 4.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수산물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은 통상 8년이며, 존속기간 종료 후 조합 청산까지 평균 1.9년이 소요되어,⁷⁾ 최종적으로 조합 설립에서 청산까지 통상 9.9년이 소요된다고 함.

2024년 11월 기준으로 총 25개의 농림수산물투자조합(자펀드)이 청산 완료되었는데, 평균 수익배수⁸⁾는 133%, 내부수익률은 7.32%로 나타났다.

7) 24.12월 현재 청산조합 25개의 평균 청산기간은 1.9년

8) 평균 수익배수: 투자자가 투자 원금 대비 얼마나 많은 수익을 회수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계산 공식> 평균 수익배수(MOIC)=총 회수 금액(투자자가 기업 매각, IPO, 배당 등으로 회수한 금액)/총 투자 금액(투자 시 투입된 원금)

2. 국회 상임위에 모태펀드 회수재원 현황 등 제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로, 동 의원으로부터 벤처투자모태조합의 회수재원 추계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6호)」과 자펀드 청산금 재투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수재원 추계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8호)」이 함께 발의되어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예산안 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회수재원 추계액 등의 국회 보고 정례화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국회 보고 내용 및 시기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식품 모태펀드는 계정 간 전출입을 하지 않으므로 계정 간 이전 현황이 포함된 보고서는 불필요함.

(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벤처투자 회수시장은 대내외 경제 상황 등의 영향 등에 따른 높은 변동성으로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와 실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따라서 추계를 근거로 투자 방향을 파악하는 것은 오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회수재원 추계액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임.

나. 검토의견

(1) 회수재원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태펀드는 정부 예산을 기업이나 투자조합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모태펀드에 예산을 출자하면 모태펀드에서 투자조합(자펀드)에 출자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운용됨.

이에 모태펀드 출자금의 특정 회계연도에 국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된 후에는 해당 예산으로 결성된 자펀드의 운용 기간(약 8~10년)이 종료되더라도 자펀드의 투자수익을 비롯한 청산금(회수재원)이 국고로 회수되지 않고 모태펀드에 남아 다른 자펀드에 대한 출자에 사용되고 있음.

[예산·기금과 모태펀드 비교]

구분	예산(일반회계)	기금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
설치 사유	•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 활동	•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한 특정자금의 운용	• 농림수산물식품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및 경영체의 건전한 성장 기반 조성
재원 조달	• 일반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함	• 출연금, 부담금 등을 통해 재원 조달	• 정부예산과 기금 등의 출자를 통해 재원 조달
운용 형태	•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	• 모태펀드 및 민간의 재원을 결합하여 농림수산물식품경영체에 투자하는 자펀드 결성
결산 양금 처리	•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의거하여 처리	• 결산상 이익금은 기금 재원 으로 적립하며,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	• 모태펀드 존속기간*동안 발생한 손익금은 모태펀드 재원으로 재 활용 *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은 30년('10~'40) * 농림수산물식품자펀드의 존속기간은 통상 8~10년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출(2025. 5. 29.)

2010년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가 출범한 이후 2025년 현재까지 운용
기간이 15년에 달함에 따라 회계연도별 출자에 활용된 재원을 예산액
과 회수재원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재출자된 회수재원은
3,844억원으로 예산액(2,570억원)의 1.5배에 달함.

[최근 5년간 연도별 출자 재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	'21	'22	'23	'24	합 계
농식품부	예산액	350	400	400	400	550	2,100
	회수재원	390	467	1,126	835	656	3,474
	소계	740	867	1,526	1,235	1,206	5,574
해수부	예산액	70	70	70	70	190	470
	회수재원	170	110	60	10	20	370
	소계	240	180	130	80	210	840
계	예산액	420	470	470	470	740	2,570
	회수재원	560	577	1,186	845	676	3,844
	소계	980	1,047	1,656	1,315	1,416	6,41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제출(2025. 5. 15.)

이러한 모태펀드의 운용 구조는 단년도 예산편성 및 결산방식에서 벗어나 회수재원을 재투자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다양한 분야의 자펀드에 분산투자하여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장점이 있음.

(2) 개정안의 필요성

이와 같은 운용 구조는 국회의 재정통제와 예산안 심의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⁹⁾

첫째, 모태펀드 예산 편성 시 조성되는 자펀드 외에 회수재원을 통해 추가적으로 결성되는 자펀드에 대해서는 국회의 통제가 어려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정부가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펀드가 재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청산금은 국고로 회수할 수 있도록 협약서·운용지침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고 회수 전 청산금을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규약(‘22.4.)」에서는 투자된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조합 만기(2040년)¹⁰⁾를 고려하여 재투자하도록 규정함에 따라¹¹⁾ 현재까지 자펀드 청산금이 국고로 회수된 사례는 없음.

9) 국회예산정책처,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 2024.11.

10) 법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②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행령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11) 규약 제32조(투자의 방법) ① 투자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서 발행하는 조합출자증서의 취득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에 최근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재부와의 협의만을 거쳐 재출자한 회수재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22 ~ '24년 회수재원으로 출자한 자펀드 현황]

(단위 : 억원)

사업연도	펀드명	모태펀드			민간	총계
		예산	회수금 등	소계		
'22년	농식품일반	90	210	300	500	800
	농식품벤처	100	200	300	95	395
	마이크로	-	156	156	39	195
	스마트농업	105	175	280	130	410
	그린바이오	-	240	240	160	400
	영파머스	-	90	90	15	105
	징검다리	105	45	150	66	216
	농식품 통합지원 (매칭형 직접투자)	-	9.9	9.9	0.1	10
소계		400	1,125.9	1,525.9	1,005.1	2,531
'23년	농식품일반	70	230	300	302.1	602.1
	직접투자	-	29.7	29.7	0.3	30
	영파머스	135	-	135	17	152
	푸드테크	-	60	60	40	100
	농식품벤처	-	100	100	25	125
	마이크로	-	52	52	13	65
	그린바이오	90	30	120	84.2	204.2
	스마트농업	105	15	120	80	200
	수출	-	140	140	70	210
	지역특성화(전북)	-	60	60	60	120
	세컨더리	-	118	118	82	200
소계		400	834.7	1,234.7	773.6	2,008.3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한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조합만기를 고려하여 채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연도	펀드명	모태펀드			민간	총계
		예산	회수금 등	소계		
'24년	농식품일반	-	150	150	150	300
	푸드테크	120	-	120	90	210
	그린바이오	-	120	120	90	210
	스마트농업	120	-	120	80	200
	전통주	-	60	60	41	101
	반려동물	-	60	60	41.1	101.1
	지역특성화(일반)	-	50	50	60	110
	지역특성화(전남)	-	40	40	90	130
	청년기업성장	160	176	336	174	510
	세컨더리	150	-	150	151	301
소계		550	656	1,206	967.1	2,173.1
합계		1,350.0	2,616.6	3,966.6	2,745.8	6,712.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제출(2025. 5. 23.)

2024년의 경우 그린바이오, 전통주, 반려동물, 지역특성화 펀드 등이 회수재원만으로 결성되었는데, 이 경우 정부가 자의적으로 투자 분야를 선정하거나 국회가 예산을 삭감한 분야에 회수재원을 출자하는 등 국회 의결 취지와 다른 펀드 운용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모태펀드의 회수재원을 통한 투자 현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심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참고로, 2020년 예산안 심의 당시 국회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모태펀드에 대해 “모태조합 출자 사업 관련 회수자금에 대한 재투자 등 활용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의결한 바 있음.¹²⁾

12)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당해 연도 모태펀드 회수액의 재출자계획을 보고하고 있음.

둘째, 회수재원의 규모가 상당한 상황에서 회수재원 추계 정보 없이는 예산안 심사 시 신규 출자금 예산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어려움.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13)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당해연도 회수재원 추계액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물모태펀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음.

[2025년도 회수재원 추계액]

• 농식품투자계정 모태펀드 현금 흐름 예상표

(단위 : 백만원)

연도	구 분		1Q	2Q	3Q	4Q	합계
2025년	기초 보유현금		130,934	187,278	187,923	142,301	
	Cash-In	농식품모태펀드 추가출자금	55,000	-	-	-	55,000
		출지원금 및 수익분배 예상액	17,076	17,076	17,076	17,076	68,304
		이 자	1,228	825	2,259	1,081	5,393
	Cash-Out	'25년도 자펀드 출자금납입	-	-	16,400	11,500	27,900
		기존 자펀드 출자금 납입	14,920	15,250	47,400	40,515	118,085
		비 용	2,040	2,006	1,157	321	5,524
	기말 보유현금		187,278	187,923	142,301	108,122	

13) 시행령 제9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운용)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식품 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전년도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산투자계정 출자한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24년 말 당좌자산(a)	25,921,549
`25년 추가출자 예정금액(신규 출자예산)(b)	7,000,000
`25년 예상 이자수익(c)	915,000
`25년 모태펀드 분배 예상금액(출자원금 및 수익금)(d)	20,037,000
`24년 말 미출자약정자산(e)	25,400,000
`25년 관리수수료(f)	1,027,318
`25년 직접비용(g)	300,000
합계(a+b+c+d-e-f-g)	27,146,231

주: 출자원금 및 수익분배 예상액은 GP(업무집행조합원)에게 펀드별 분배예상금액을 조사하여 합산
 자료: 2025년도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계정 및 수산투자계정 운용계획

그러나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다음연도의 회수재원 규모 및 회수재원의 투자방향(주목적 투자, 민간 매칭 비율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2025년 농식품모태펀드 출자(1150-345) 예산 사업설명자료]

3) '2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③ 농식품모태펀드출자

- : ('24) 55,000백만원 → ('25요구) 55,0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정책 기조에 따라 청년·초기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운용체계 개선 및 특수펀드 필요성 증가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 확대를 위해 55,000백만원 요구
- (산출) 청년기업 성장펀드 336억원 : 470억원 결성(정부 336+ 민간 134)
 - ①창업초기(Start-up) 56억원 : 70억원×80%(모태펀드 매칭비율)×1개+
 - ②사업화(Step-up) 160억원 : 200억원×80%(모태펀드 매칭비율)×1개+
 - ③후속투자유치(Scale-up) 120억원 : 200억원×60%(모태펀드 매칭비율)×1개
- 스마트농업펀드 107억원 : 178.33억원×60%(모태펀드 매칭비율)×1개
- 푸드테크펀드 107억원 : 178.33억원×60%(모태펀드 매칭비율)×1개
- * 특수목적펀드의 종류는 당해연도 수요, 유망 성장분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5,000	○ 일반출자금(460-1) : 55,000백만원 가. 스마트농업펀드 12,000 (1개 x 20,000 x 0.6(매칭비율)) 나. 영파머스펀드 16,000 (1개 x 20,000 x 0.8(매칭비율)) 다. 푸드테크펀드 12,000 (1개 x 20,000 x 0.6(매칭비율)) 라. 세컨더리펀드 15,000 (1개 x 25,000 x 0.6(매칭비율))	55,000	○ 일반출자금(460-1) : 55,000백만원 가.청년기업 성장펀드 336,600 - 창업초기 5,600(1개 x 7,000 x 0.8(매칭비율)) - 사업화 16,000(1개 x 20,000 x 0.8(매칭비율)) - 후속투자유치 12,000(1개 x 20,000 x 0.6(매칭비율)) 나. 스마트농업펀드 10,700 (1개 x 17,833 x 0.6(매칭비율)) 다. 푸드테크펀드 10,700 (1개 x 17,833 x 0.6(매칭비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예산 정부확정안 사업설명자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펀드 출자사업의 경우 각 부처는 기재부에 “기 출자예산의 집행 실적(기존 출자예산을 통한 자펀드 결성 실적 및 결성된 자펀드의 투자 현황 등), 투자금의 회수 및 재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적정한 출자예산을 요구”하여야 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출자금 예산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회수재원 추계 자료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요컨대, 개정안은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정기회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모태펀드 사업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권 및 예산안 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3) 논의 필요 사항

다만, 다음연도 회수재원 추계와 관련하여,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회수금액의 높은 변동성과 모태펀드 운용 일정¹⁴⁾ 등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초 회수추정액과 연말실제 분배액은 최저 6.5%에서 최고 194.2%까지 편차를 보이고 있음.

14) 운용계획 수립(1월)→운용사 선정(정가: 3~4월/추가: 6~7월)→자펀드 결성(6~7월/9~10월)→투자처 발굴(8월~/11월~)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상 및 실제 회수금액]

(단위: 억원, %)

연 도	`20	`21	`22	`23	`24
연초 분배 예상금액(A)	399	312	845	823	676
연말 실제 분배금액(B)	373	918	768	518	388
차이(=B-A)	△26	606	△77	△305	△288
과리율(B/A-1)	△6.5	194.2%	△9.1	△37.1	△42.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제출(2025. 5. 15.)

이는 회수재원 규모가 상장시장, 금리, M&A 시장 등 다양한 대내외 경제적 여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연초가 아닌 전년도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보고하는 추계액은 편차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음.

이에 추계를 근거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를 심사하는 것은 적정 예산규모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임.

따라서 추계액의 오류를 감안하더라도 개정안처럼 다음연도 회수재원 추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토록 할 것인지, 또는 당해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사후적 통제를 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14

참고1

농식품모태펀드 조성 및 자펀드 결성 현황

(단위: 억원, 개)

구 분			펀드결성금액(개수)													
			'10~'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재원조성	직접	예산	1,678	600	500	300	200	100	200	350	400	400	400	550	5,678	
		회수금 등	124	90	100	600	400	320	300	390	467	1,126	835	656	5,408	
		소계	1,802	690	600	900	600	420	500	740	867	1,526	1,235	1,206	11,086	
	민간		1,728	450	460	555	420	305	481	767	811	1,005	773	967	8,722	
	계		3,530	1,140	1,060	1,455	1,020	725	981	1,507	1,678	2,531	2,008	2,173	19,808	
자펀드조성	일반	농식품 일반	310 (2)	320 (3)	640 (3)	755 (2)	500 (3)	200 (1)	630 (2)	752 (2)	392 (2)	800 (2)	602 (3)	300 (1)	6,201 (26)	
			2,200 (12)	290 (1)											2,490 (13)	
	특기 모태펀드	8대 프로젝트	520 (2)	-	-	-	-	-	-	-	-	-	-	-	520 (2)	
		소규모 경영체	200 (2)	100 (1)	100 (1)	-	-	-	-	-	-	-	-	-	200 (2)	
			300 (3)												500 (5)	
		6차산업	-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	-	-	-	-	400 (4)		
														100 (1)		
		수출	-	130 (1)	100 (1)	100 (1)	-	-	-	-	-	-	210 (1)	-	210 (1)	
															330 (3)	
		R&D	-	100 (1)	-	-	-	-	-	-	-	-	-	-	-	100 (1)
		AgroSeed	-	100 (1)	-	-	-	-	-	-	-	-	-	-	-	100 (1)
		창업 아이디어	-	-	120 (1)	-	-	-	-	-	-	-	-	-	-	120 (1)
		스마트팜	-	-	-	500 (3)	-	-	-	-	-	-	-	-	-	500 (3)
		ABC	-	-	-	-	420 (2)	-	100 (1)	-	-	-	-	-	-	520 (3)
		농식품벤처	-	-	-	-	-	125 (1)	125 (1)	260 (2)	225 (2)	395 (3)	125 (1)	-	-	1,255 (10)
		지역특성화	-	-	-	-	-	100 (1)	-	110 (1)	-	-	120 (1)	240 (2)	-	570 (5)
		세컨더리	-	-	-	-	-	200 (1)	-	-	520 (1)	-	200 (1)	301 (1)	-	1,221 (4)
		마이크로	-	-	-	-	-	-	126 (2)	65 (1)	65 (1)	195 (3)	65 (1)	-	-	516 (8)
		징검다리	-	-	-	-	-	-	-	220 (1)	-	216 (1)	-	-	-	436 (2)
		영파머스	-	-	-	-	-	-	-	100 (1)	105 (1)	105 (1)	152 (1)	200 (2)	-	662 (6)
		그린바이오	-	-	-	-	-	-	-	-	150 (1)	400 (2)	204 (1)	210 (1)	-	964 (5)
		스마트농업	-	-	-	-	-	-	-	-	150 (1)	410 (2)	200 (1)	200 (1)	-	960 (5)
		창업보육	-	-	-	-	-	-	-	-	71 (1)	-	-	-	-	71 (1)
		푸드테크	-	-	-	-	-	-	-	-	-	-	100 (1)	210 (1)	-	310 (2)
		직접투자	-	-	-	-	-	-	-	-	-	10 (1)	30 (1)	-	-	40 (2)
		청년기업성장	-	-	-	-	-	-	-	-	-	-	-	-	310 (2)	310 (2)
		반려동물	-	-	-	-	-	-	-	-	-	-	-	-	101 (1)	101 (1)
		전통주	-	-	-	-	-	-	-	-	-	-	-	-	101 (1)	101 (1)
계			3,530 (21)	1,140 (9)	1,060 (7)	1,455 (7)	1,020 (6)	725 (5)	981 (6)	1,507 (8)	1,678 (10)	2,531 (15)	2,008 (13)	2,173 (13)	19,808 (12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5.6.4. 제출)

참고2

수산물태펀드 조성 및 자펀드 결성 현황

(단위: 억원, 개)

구 분			펀드결성금액(개수)												
			'10~'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재원조성	정부	예산	329	100	100	100	100	100	70	70	70	70	70	190	1,369
		회수금 등	-39*	-	-	40	-	-	175	170	110	60	10	20	546
		소계	290	100	100	140	100	100	245	240	180	130	80	210	1,915
	민간		290	50	50	60	50	50	105	60	75	66	53.4	143.5	1,052.9
	계		580	150	150	200	150	150	350	300	255	196	133.4	353.5	2,967.9
자펀드조성	일반펀드	수산물일반	430 (3)	150 (1)	150 (1)	200 (1)	150 (1)	150 (1)	350 (2)	-	150 (1)	100 (1)	-	-	1,830 (12)
			150 (1)												150 (1)
	특수목적펀드	수산물벤처	-	-	-	-	-	-	-	300 (2)	105 (1)	96 (1)	-	-	501 (4)
		스마트양식 산업혁신	-	-	-	-	-	-	-	-	-	-	133.4 (1)	-	133.4 (1)
		블루푸드테크	-	-	-	-	-	-	-	-	-	-	-	202 (1)	202 (1)
		세컨더리	-	-	-	-	-	-	-	-	-	-	-	151.5 (1)	151.5 (1)
계			580 (4)	150 (1)	150 (1)	200 (1)	150 (1)	150 (1)	350 (2)	300 (2)	255 (2)	196 (2)	133.4 (1)	353.5 (2)	2,967.9 (20)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2025.6.4. 제출)

* 실제 회수액이 음수는 아니나 비용 및 결성에 소요되는 시간 등으로 인해 예산액에 비해 펀드결성금액이 적으므로 음수로 산출(예산액+회수액=소계)